

강원도립대학교 졸업사정위원회 운영규정

(제정) 1998-03-31 규정 제009호

(개정) 2000-10-19 규정 제082호

(개정) 2015-03-13 규정 제362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의 졸업여부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졸업사정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구성) 본 위원회는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조직) 본 위원회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, 간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16.4.25.>

제4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.

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졸업대상자에 대한 졸업 여부에 관한 사항
2.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3.13.>

부 칙(1998. 3. 31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10. 19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03. 13)

이 개정 규정은 2015년3월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